포괄적 법률로서의 2022년 금융 서비스시장법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싱가포르의 금융 법제는 법률 하나하나가 더해지며 성장해 왔습니다. 1970년 은행법(Banking Act 1970), 1966년 보험법(Insurance Act 1966), 2001년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SFA) 및 2001년 재무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 2001)은 각각 하나의 부문을 규제합니다. 2005년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 2005)과 2019년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도 마찬가지이며, 각 법률은 고유의 라이선스, 영업행위 규칙 및 집행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은 이러한 부문별 법률 위에 자리하면서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모든 부문에 걸쳐 행사하고자 한 권한을 담는 횡단적 법률로 구상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4월 5일 의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1]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네 그룹의 규정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Part 9로, 싱가포르에서 영업하지만 싱가포르 외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창설합니다. 이 제도는 제K편 제V장에서 검토하며 아래 제III장에서 요약합니다. Section 137은 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인이나 조합이 라이선스 없이 싱가포르 내 영업장소에서 싱가포르 외부를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136은 디지털 토큰을 2019년 지급서비스법 section 2(1)에서 말하는 디지털 지급 토큰 또는 2001년 증권선물법에서 말하는 자본시장상품의 디지털 표상으로 정의합니다.[2] Section 137(5)의 면제 규정은 동일한 활동에 대해 이미 부문별 법률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면제된 자가 두 번째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그룹은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 발령 권한의 통일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MAS가 비위행위가 발생한 부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어떤 사람을 금융업계에서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선물법에 따라 금지된 펀드매니저가 이론상 지급서비스 회사의 이사로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 Part 7은 적격성(fit and proper)이 없는 사람에 대해 MAS가 디지털 지급 토큰 라이선스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규제 대상 금융기관에서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그룹은 MAS가 모든 금융기관에 기술위험관리 요건을 부과하고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핵심 위험이 사이버 위험인 거래소와 수탁기관에 중요합니다. 넷째 그룹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 권한을 부문 간에 통일하고, 이에 관한 MAS 고시를 어떤 부류의 금융기관에든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3]

MAS 스스로 이 법을 '포괄적(umbrella)'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한 가지 면에서는 적절하고 다른 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문과 관계없이 모든 규제 대상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부문별 라이선스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지급 토큰 사업은 여전히 2019년 지급서비스법에 따른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토큰화 증권 거래소는 여전히 2001년 증권선물법에 따른 인가가 필요하며, 토큰을 보유하는 신탁회사는 여전히 2005년 신탁회사법에 따른 라이선스가 필요합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다.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권한의 층위를 하나 더하고,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자를 위해 새로운 라이선스 하나를 추가합니다. 빼앗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1.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Act 18 of 2022), 2022년 4월 5일 의회 통과. 고시에 의한 단계적 시행, 첫 단계는 2023년 4월 28일부터, Part 9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 ↩
2.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s. 137(1), (3), (5) 및 (6)(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 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Financial Advisers Act 2001 또는 Payment Services Act 2019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 대한 면제, 벌칙) 및 s. 136(1)('digital token', 'digital payment token' 및 'digital token service'의 정의), Singapore Statutes Online에 게재된 법문. ↩
3.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Part 7(금지명령), Part 5(기술위험 관리) 및 Part 4(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